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서민지원 등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조)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안 제3조)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나.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③ (생략)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 2021년 12월 31일-----.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

1. (현행과 같음)

2. ----- 2020년 12월 31일-----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 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 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18</u> <u>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 ----- ----- <u>2021</u> <u>년 12월 31일</u>-----.
--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 ⑧ 생략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 ③ 생략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생략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

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 ⑤ 생략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

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③ 생략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이 장 호
	담 당	김 진 오
	담 당 자	김 대 실 (480-6852)